

제147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면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검토보고서	17면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21면
3.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동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4면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동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6면
4.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9면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2면
5.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6면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46면
6.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관리국	53면
나. 생활복지국	97면
다. 보 건 소	145면
라. 감사담당관	172면
마. 시설관리공단	183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8
----------	------

제출일자 : 2005. 2.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각종 홍보행사(이벤트) 등을 실시함에 있어 선거관련법에 저촉되는 논란을 사전 차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보상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우리 구 홈페이지 내에서 홍보행사(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내용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및 근거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일부개정 2004.3.12 법률 제07189호)
- 2) 'e-종로 인터넷정보포털시스템' 운영계획 (구청장방침, 2005.1.12)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510만원 확보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민”을 “사람”으로 하고, “보상을 실시 할 수 있다”를 “보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참여마당 운영) ① (생 략) ②구청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8 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 을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설 치·운영 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 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참여마당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③----- <u>사람</u> ----- <u>할 수 있다.</u>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 들의 적극적인 구청참여 또는 구청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 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 ----- ----- ----- <u>이 경우 행사에</u> <u>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u> <u>에서 보상할 수 있다.</u>